

【사건번호 2018-014】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본정보 API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 등록번호별 기본정보*
 - * 차명, 최초등록일, 취득가액, 제원관리번호 등 17개 항목
- 데이터 신청 목적
 - 중고차 정보 서비스

2. 신청취지

- 신청인은 중고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별 기본 정보를 제공 신청
-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에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함

3. 사실조사

가.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등록원부**를 관리
 -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10항)
 - ** 자동차등록령 별지 제1호서식

- 같은 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자동차제원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
 - * 자동차제원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등
 - 신청인이 제공신청한 데이터 17개 항목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산화 되어 관리되고 있음
-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종류(승용·승합·화물·특수)와 용도(비사업용·운수사업용·외교용)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자동차관리법 제16조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하며, 1~2자리의 숫자는 자동차의 종류, 3자리의 한글은 자동차의 용도를 표시함(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 ※ 12하XXXX는 승용,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의미함(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참조)

나.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현황

- 공공데이터 제공(공공데이터법)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5-012사건: 위원회는 자동차제원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또는 분리조치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권고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신청인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 일부 등의 정보를 제공

구 분	자동차 정보	공개가능 여부	샘플데이터
1	자동차등록번호	부분가능	경기(XX)우(XXXX)
2	차종	가능	승용
3	용도	가능	자가용
4	차명	가능	아반떼엑스디

구 분	자동차 정보	공개가능 여부	샘플데이터
5	형식 및 연식	가능	XD-15DL-A1, 2005년
6	차대번호(17자리)	부분가능	KMHHDG41DBCUXXXXXXX
7	원동기형식	가능	G4FK
8	사용본거지	부분가능	서울시 강남구
9	소유자 주소	부분가능	서울시 강남구
10	제원관리번호	가능	A0810008500141211
11	길이	가능	4920
12	너비	가능	1860
13	높이	가능	1470
14	총중량	가능	2500
15	배기량	가능	1495
16	정격 출력	가능	145
17	승차정원	가능	5
18	최대적재량	가능	1000
19	기통수	가능	4
20	연료의 종류	가능	휘발유

※ 2015-012사건 데이터 제공 범위 중 발췌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7-028사건: 위원회는 자동차등록번호 1~3자리 및 차대번호 1~10자리 데이터*를 제공하되, 국내에 소수 등록된 차량의 경우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도록 권고

* 국내생산차량 제외

- 당사자는 국내 500대 이하로 등록된 차량의 데이터는 제외토록 합의

o 전산자료신청을 통한 제공(자동차관리법)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

- (신청)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승인)
 -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국토부장관은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3개 항목 및 4.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사례) 국토교통부 담당자(자동차운영보험과 이정록 주무관)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가입관리),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매매업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무), 유료도로 운영회사(유료도로법에 의한 통행료체납금 통지업무) 등이 동조항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이용

○ 자동차이력관리정보제공(자동차관리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정보”)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 가능
-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정보제공 신청(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제2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본인차량 및 타인차량 조회 가능
(2015.10~)

-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 제공
 - * 수수료 부과: 본인차량(452원), 타인동의차량(452원), 타인 미동의 차량(226원)
-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필요한 정보*와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로 구분
 - *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정보, 자동차세 체납정보, 보험가입정보, 정비이력정보 등(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등(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
- 단,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이용자가 특정한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자동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한적 제공 방식을 취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조2제1항 및 제2항)

다.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o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o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 정의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마.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 o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 및 제원정보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6.18.선고 2011두2361),
 -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되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그 판단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두8050판결 등)
 -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원부에 등록번호, 차대번호와 함께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자동차 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개인정보정책과-231(2017.8.30.))
 -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정보에 대해 다섯 차례의 분쟁조정(2014-014사건, 2015-012사건, 2016-005사건, 2017-007사건, 2017-028)을 진행하였고, 개인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올해 진행하는 자동차종합정보 개방체계 고도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법 제17조제1항각호)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 위원회의 사실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 자체의 개인정보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 및 관행을 고려하면, 자동차 등록번호 데이터의 개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 개방체계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신청인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주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5. 조정결과

- 위와 같은 조정안을 피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락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은 불성립 된 것으로 사건 종결함